

[계약책임분쟁]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여부 - 불가항력 (Force Majeure)



5. 불가항력 (不可抗力; Force Majeure)

41

가. 계약내용의 이행 불능

-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 존재
- 계약 당시부터 객관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무지 등으로 계약한 경우: 객관적 이행불능(objective impossibility)으로서 원시적 이행불능(existing impossibility)
- 양 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 효력 발생하지 않음.
- 계약 당시에는 이행 가능했으나 그 후 어떤 사정으로 이행을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후발적 이행불능 (consequential, supervening impossibility) : 그 법적 취급에 있어서 문제 발생
- 대한민국 민법 제537조(채무자 위험부담주의)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면책**
- 계약 배경 사정이 근본적으로 변경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 frustration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됨.
- Frustration은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해지의 문제

6. 불가항력 (不可抗力; Force Majeure)

42

나. 규정의 필요성

- 당사자의 귀책 없이 발생한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대륙법(대한민국 포함)에서는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가 소멸되나, 영미법에서는 계약상 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특히 영미법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주의 필요.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주요 내용

- 면책 사유 특정
- 면책 조건으로서,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사실 및 사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보고할 의무 부과 : 상대방이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음을 이용하여 불가항력 주장하며 의무 해태 하는 것을 방지
- 약정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의 이행 지연의 효과만 발생할 뿐 불능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대비한 규정 필요

7. 불가항력

43

- 약정한 불가항력 사태가 장기화 됨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되는 상대방을 구제하기 위해, 불가항력 사태가 약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될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 부여함이 바람직함

라. 검토의 Check Point :

-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불가항력 사유를 가능한 한 많이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 사유를 일일이 검토하여 해당 거래 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 공급자를 면책시킬 여지가 있는 통상의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것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함이 바람직함;
- 계약 불이행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사분규(Labor Trouble 또는 Labor Disturbance)가 불가항력사유로 되는지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나 판례는 대부분 부정적이므로(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일함) 국제계약의 체결 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그 자신의 근로자에 의하거나 노사분규를 불가항력 사유로 삼입하여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매자의 경우는 그 반대임
- 금전채무의 이행에 있어서는 불가항력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임

8. 불가항력

44

마. 보완 규정

- 상대방에의 통지의무, 불가항력 사실발생에 대한 증명(공인기관에 의한 증명취득)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좋음.
- ☞ The party encountering a Force Majeure event shall,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of the details of such Force Majeure event and when such party will be able to commence performance hereunder. The party claiming Force Majeure shall produce, upon request, sufficient evidence of the occurrence of Force Majeure to support such claim. Such evidence may consist of documents issued by any official government agency or independent organization acceptable to both parties.

9. 불가항력 조항 예시

45

- 8.1 In the event of any delay in performance or failure of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due to any causes arising from or attributable to acts, omissions, events, accidents or acts of God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ies concern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trike, lockout, shortage of labor or other labor troubles, interruption of transportation, embargo, prohibition of import or export of the Products, governmental orders, restriction, riot, invasion, war (declared or undeclared), fire, explosion, sabotage, storm, flood, earth quake, epidemics, inability to obtain suitable raw material, fuel, power and components, such delay or failure of performance shall not be deemed a default and the party so delayed or prevented shall be under no liability for loss or cost suffered by the other party thereby.
- 8.2 Upon the occurrence of any such event the affected party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ther party hereto as much in detail as possible and shall keep the other party hereto informed of any further development of such event.
- 8.3 Immediately after such event ceases or is removed, the affected party shall perform its obligations pending with due speed.
- 8.4 In the event that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is wholly suspended for a period of three (3) month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at least thirty (30) days' notice in writing to the aforesaid effect.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